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김선교·윤상현·박충권

이종배 · 김상훈 · 구자근

서지영 · 김성원 · 김위상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,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 간 협의나 부양 및 양육 여부,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를 정하며, 부모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 및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급여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5조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"을 "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경우
- 2. 제78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부가 제한된 경우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
 - 가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
 - 나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
 - 다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

워

라. 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

제74조의5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제78조의2에 따른 보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2(보상의 제한)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,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보상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~ ④ (생 략)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 우,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우에는-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 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 는 것으로 본다. 1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 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 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 <u>경</u>우 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 2. 제78조의2에 따라 보상의 전 2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부가 제한된 경우 소집된 상근예비역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. 「병<u>역법」 제25조에 따라</u>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 무 중인 경우 <u>가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</u> 소방원 4. 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 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 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으로 소집된 사람 포함한다)

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등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 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74조의5(보훈심사위원회의 설 저치)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.

1. ~ 12. (생 략) <신 설>

나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					
라 소집된 상근예비역					
다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					
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					
및 의무소방원					
라. 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					
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					
요원으로 소집된 사람					
6					
<u> </u>					
게드킨 가 주시 시1 의기시					
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			
<u>해당하는 경우에는</u>					
세74조의5(보훈심사위원회의 설					
刻) ①					
· 1. ~ 12. (현행과 같음)					
1. 12. (한 8의 필요) 12의2. 제78조의2에 따른 보상					
14-14. 71110年74-11 四日 王 6					

13. ~ 15. (생 략)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 의 제한에 관한 사항13. ~ 15. (현행과 같음)② (현행과 같음)

제78조의2(보상의 제한) 국가보훈 부장관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에 대 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었 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 기간,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